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9
----------	---------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체계적인 조례 제정 도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내용 (안 제3조)

다. 관광진흥사업 지원, 업무 위탁 (안 제4조 ~ 제6조)

라.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사전 승인 (안 제7조 ~ 제9조)

마. 포상 등 (안 제10조)

바.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

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안 제12조 ~ 제13조)

아. 위원회 운영 (안 제1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2) 「공직선거법」 제112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2020. 2. 20. ~ 3. 10.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
2. 설명회·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 상품·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관광안내소의 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사전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1인당 1만원 이내의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전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 진흥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관광 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 대한 1인당 1만원 이내의 기념품 제공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됨
- 기념품 제작에 따라 연평균 4,000천원 예산이 소요됨

#### 4. 작성자: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과장 김 봉 조

(담당: 임기제 행정8급 승병철 / ☎ 2600-6552)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 □ 제정사유

-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체계적인 조례 제정 도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내용 (안 제3조)
- 관광진흥사업 지원, 업무 위탁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사전 승인 (안 제7조 ~ 제9조)
- 포상 등 (안 제10조)
-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안 제12조 ~ 제13조)
- 위원회 운영 (안 제14조)

##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우리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지원,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4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과	통보(조치)일		2020. 3.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04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승병철	전화번호	02-2600-65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0년 03월 05일</p> <p><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p> <p>(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문화체육과장 귀하</p>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